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(1공구) 건설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19.03.04 (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윤원섭, 전용현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사용중인 슬링벨트가 마모가 심하니 전수조사를 시행 후 현장외 반출 또는 폐기처리 요망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1(벨트슬링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자재운반구의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, 정격중량을 표기하여 관리 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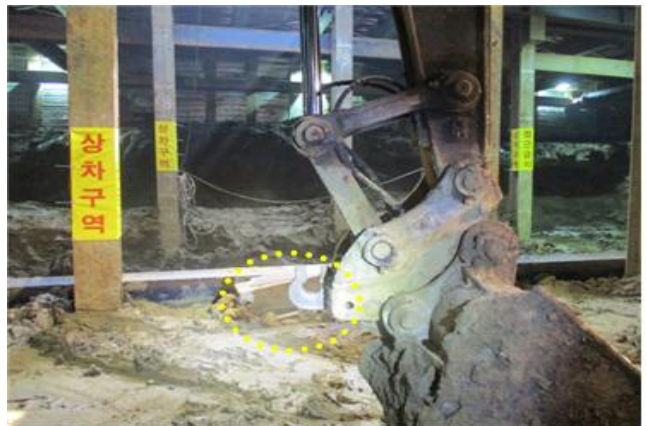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3(자재운반구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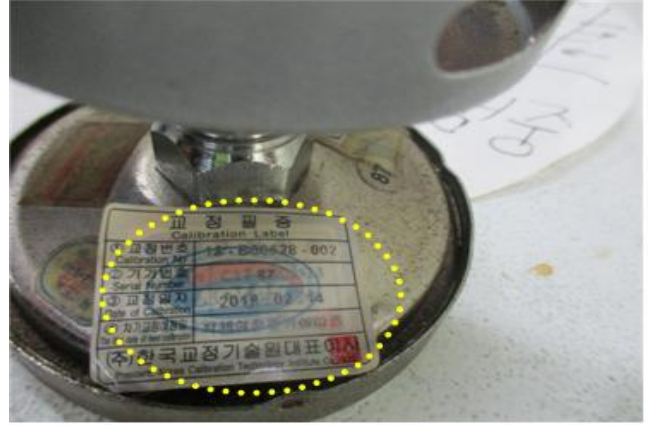
- 현장에서 사용중인 굴삭기는 근로자 협착 및 충돌재해 예방을 위하여 장비실명제를 부착 바라며, 또한 혹해지 장치를 설치 하여 안전성 확보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품질시험실 내부에 보관중인 일부 시험장비 (공기량 측정기)가 검교정 일자가 지난 것이 그대로 있으니, 반드시 검교정을 실시하여 시험기기의 신뢰도 및 품질관리를 하기 바람.



○ 터널 안전(방재시설부)

- 공기정화시설 상행선 Sta 4+500 지점은 터널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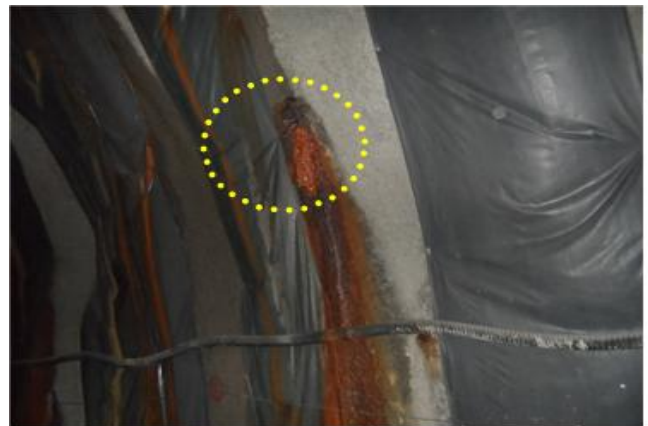
① 벽체의 열화 방지를 위하여 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.

② 유출수로 인하여 용탈된 숏크리트 성분이 벽체에서 결정되어 고드름이 생성되고 있으니 열화된 벽체 보수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1

(터널 배수작업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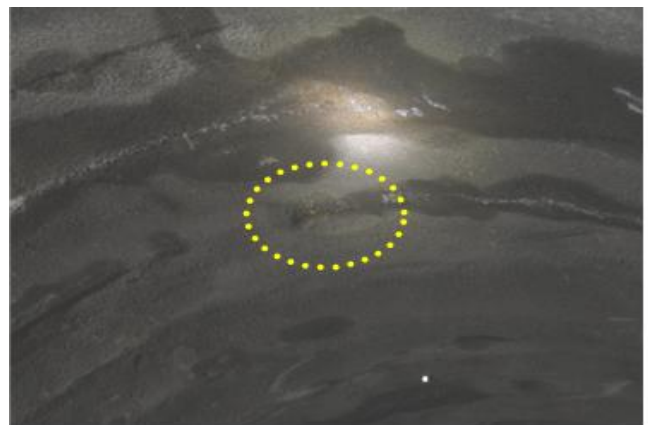


○ 터널 안전(방재시설부)

- 공기정화시설 상행선 Sta 5+036 지점은 터널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① 천단부에서 숏크리트 일부가 탈락되어 있으니 보수 요망.

② 벽체부의 공극이 발생되어 있으니 숏크리트가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.

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개착구간 상부의 PE휀스 설치구간은 통행차량 충돌 시 이동 또는 작업중인 근로자와 충돌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충돌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PE휀스에 물을 채워 관리하기 바람.

